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수련의 의료윤리 교육목표

박형욱*, 김소윤*, 손명세**

1. 서론

의료윤리 교육은 의료행위나 의학연구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준다. 나아가 의료윤리 교육은 이러한 윤리적 상황에서 원숙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본격적인 사회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수련의 과정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때 이루어지는 의료윤리 교육은 전문직 윤리의 함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이러한 수련의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대한의학회는 2007년 3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수련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이하 '의료윤리 교육목표'라고 함)를 개발한 바 있다. 의료윤리 교육목표는 의과대학에서의 기존의 의료윤리 교육이

주로 인간복제, 안락사, 낙태, 유전자 조작 등 생명윤리적 관점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주제들, 임상 의사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국병원 교육수련부장 및 각 대학의 의료윤리 담당 교수들의 토의를 통하여 총 6개의 대항목으로 분류된 총 23개의 소항목을 개발하였다. 각 소항목 아래에는 2개에서 4개의 증례를 제시하여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위 의료윤리 교육목표는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현실의 문제를 증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외국 문헌의 번역 내지 번안에서 출발한 기존의 윤리교육 교재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3,4)}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한 전문직 윤리 교육 증례는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한 소재라는 장점이 있으나 보통 의사의 일상적 의료행

교신저자: 박형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02-2228-2534, ismipark@yuhs.ac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1) 이호영. 한국에서의 의료윤리교육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편). 가을 학술대회 연제집. 2006 : 5-13.
- 2) 임기영.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졸업 후 의료윤리교육.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편). 가을 학술대회 연제집. 2006 : 15-21.
- 3)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의학회. 한국 수련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 2008.
- 4) 정유석, 고윤석, 권복규 등.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8 ; 11(2) : 183-190.

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전달 과정에서 법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의 법적 문제는 보통 의사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보통 의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증례가 현행 법령하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언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윤리적 쟁점만 논의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 역시 전문직 윤리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변호사 윤리 교육의 내용은 의료윤리 교육과는 초점이 전혀 다르다. 즉 변호사 윤리 교육은 법적 금지에 대한 교육, 즉 위반 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⁵⁾ 변호사윤리강전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⁶⁾ 물론 이러한 전문직 윤리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의료분야에 적절한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윤리 교육이 법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전문직 윤리 교육의 한 측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⁷⁾

예를 들어 2003년 영국의 '일반 의료위원회'가 발간한 '미래의 의사'는 의학교육에 대한 권고안에서 의사들이 법적·윤리적 쟁점(ethical and legal issues)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의사들은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뿐 아니라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⁸⁾ 한편 우리나라의 의사윤리지침 제2조는 "이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사 윤리에 관한 선언, 강령, 대한민국의 제 법령, 대한민국 정부가 조인하거나 승인한 관련 외교조약과 국제협약 등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사윤리지침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9,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문직 윤리 교육에서 사안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이해도 중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1) 의료윤리 교육목표에서 제시된 증례에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2) 법적 쟁점을 누락한 증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3) 중요한 증례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8년 한국의료윤리학회와 대한의학회가 작성한 '한국 수련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에 실린 총 6개의 대항목, 총 23개의 소항목에서 제시된 총 47개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5) 채근직,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편), 한국법률가대회 연제집, 2008.

6)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회 회칙, 2000.

7) 유호중, 손명세, 이경환, 의료문제에 대한 윤리와 법의 통합적 접근: 의료법윤리학 서설, 서울: 동림사, 2002: 13-17.

8) General Medical Council, Tomorrow's doctors, 2003.

9)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2001.

10) 구영모, 의사윤리지침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2003; 6(2): 119-140.

우선 대항목, 소항목 별로 총 47개의 증례를 분석하여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증례를 규명하였다. 의사의 법적 책임의 가능성은 “있음”, “거의 없음”, “없음” 으로 분류하였다. 증례는 그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것도 있지만 그 판단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다시 말해 증례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법적 책임 여부를 확정짓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음 총 47개의 증례에 첨부되어 있는 질문사항(고찰사항)을 분석하여 해당 증례가 윤리적 논점만을 제시하고 있는지 혹은 윤리적 논점과 동시에 법적 논점도 제시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정확한 법적 논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맥락상 법적인 의무를 언급하는 경우 법적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대항목, 소항목 별로 법적 논점을 누락한 증례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항목, 소항목 별로 중요한 증례를 선정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논의하여 의료윤리 교육목표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대항목별로 제시된 논점의 유형과 의사의 법적 책임의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총 47개의 증례 중에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증례는 모두 30개로 66%에 달했다. 즉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혹은 보편적인 주제들은 상당수가 현행 법령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증례 중에서 법적 논점을 제시한 증례는 모두 8개에 불과하였다. 즉 의사에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증례의 71%가 법적 논점을 생략한 채 윤리적 쟁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대항목, 소항목 별로 중요한 증례를 선정하여 의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표 2>

<표 1> Cases Omitting Legal Issues

대항목	증례수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증례수(A)	법적 논점을 제시한 증례수(B)	법적 논점 생략률(%) (A-B)/A×100
전문직 윤리	8	7	1	85.7
환자-의사관계	17	10	4	50.0
동료 의료인 관계	6	3	1	66.7
의료환경과 제도	6	5	1	83.3
치료중단과 죽음의 문제	4	3	1	66.7
연구윤리	6	2	0	100.0
합계	47	30	8	71.0

〈표 2〉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Professional Ethics’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의 유형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1) : 비전문적 진료행위 - 검증되지 않은 시술/보완대체의학		
증례 1 : 근거 없는 “기” 진단기의 도입 여부	윤리적	있음
증례 2 : 수술을 거부하고 대체요법을 고집하는 폐암 환자	윤리적	있음
소항목(2) : 의사의 이해상충 - 의료산업과의 관계/환자소개 및 알선/허위광고행위		
증례 3 : 의국지정 재산제 요구와 의국비 지원 제안	윤리적	있음
증례 4 : 레커차 회사와의 교통사고 환자 유치 협력	윤리적·법적	있음
증례 5 : 말기 암환자를 완치시킨다는 한의원의 광고	윤리적·법적	없음 ¹¹⁾
소항목(3) : 의사의 진실성 - 허위 진단서/의무기록의 위변조		
증례 6 : 당뇨 진단일을 고쳐 달라는 단골 환자	윤리적	있음
증례 7 : 전화로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	윤리적	있음
소항목(4) :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용		
증례 8 : 사장을 위해 신장을 자발기증하겠다는 일본인 직원	윤리적	있음

「소항목(1) 비전문적 진료행위 - 검증되지 않은 시술/보완대체의학」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의사들이 근거가 부족한 의료시술들을 도입하는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A). 2.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의 시행과 관련된 윤리적 논점들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A). 3.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를 다음의 상황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 1) 치료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환자가(예, 조기 암환자) 보완대체의학만을 고집하는 경우, 2) 제도권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자가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려는 경우(생명과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증상에 대하여).

위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법적 책

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례 1은 근거 없는 “기” 진단기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례이다. 의료기 판매 회사의 부장이 전신의 “기” 흐름을 알려주는 의료기기를 소개하며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자 의사가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의료행위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2) 새로운 기계의 도입은 당신의 진료행위에 어떤 변화(영향)를 가져올 것인가? 3) 의사 개인이 경험적으로 효과를 느끼지만 학계의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술을 할 때 고려할 점과 주의점은 무엇일까?

이러한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1)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 행위 등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2) 의료법 제66

11) 의료윤리의 문제에 있어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법적 책임을 규명한 것이다. 증례 5에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의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로 증례5에 제시된 질문도 ‘이런 광고에 대하여 의사로서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료계 전체의 대처는 어떠해야 할지 토론해보자’로 되어 있다.

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서 면허자격 정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3) 더 나아가 국민의료보험법상 임의비급여 금지 법령에 위배되어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증례 1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논의한 후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항목(2) 의사의 이해상충 - 의료산업과의 관계/환자 소개 및 알선/허위광고 행위」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제약사나 의료기구상 등 의료산업이 제공하는 마케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환자수 증대를 위한 환자 알선 및 소개 행위의 위법성과 비윤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현행법규상 어떤 제재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 1) 의료광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2) 거짓광고를 한 경우, 3) 과장광고를 한 경우.

위 학습목표 2, 3(각각 증례 4, 5에 해당)에는 윤리적 논점과 동시에 법적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증례 3은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관련된 학습목표 1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증례 3은 신생 제약회사인 L사의 직원이 찾아와 새로 출시한 제산제를 의국지정약으로 지정해 준다면 매월 50만원씩을 의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전공의가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어차피 써야 할 약이라면 특정 회사 약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까? 2) 제

약회사 직원의 접촉을 일체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3) 이러한 제안이 특정 약과 조건 없이 많이 처방한 경우에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향응과 윤리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4) 당신의 결정을 비슷한 다른 증례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이 동료 의료계나 대중에게 알려져도 떳떳할 수 있는가?

이러한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1) 우선 전공의가 국립병원 소속인 경우 형법상의 수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립병원 소속인 경우 형법상의 배임죄,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면허자격 정지사유가 될 수 있으며, 3) 더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증례 3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논의한 후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항목(3) 의사의 진실성 - 허위진단서/의무기록의 위·변조」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의 위·변조가 흔히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열거하고 이의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의무기록을 위·변조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A). 3.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의 윤리적, 법적 문제점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B).

우선 위 소항목의 제목과 구체적 학습목표와 증례는 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증례 6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이며, 증례 7은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이다. 즉 증례에는 의무기록의 위·변조와 관련된 사

례는 없으며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된 사례도 없다. 의무기록의 위·변조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의사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은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다고 하여 형법상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즉 소항목의 제목과 구체적 학습목표와 증례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위 학습목표는 증례 7과 관련된 내용에서만 법적 논점을 언급하고 있다. 증례 7은 대면진료 없이 혈압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단골환자가 수면제까지 대면진료 없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고민하는 내용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반복 처방이 일상화된 단골환자의 경우 반드시 직접 대면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

일까? 2) 만일 전화를 통한 처방전 발행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진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3)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오지나 도서 주민을 위한 인터넷 화상통신 등 원격진료에 대한 인프라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접 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행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이러한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않다. 그러나 1) 재진환자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2) 환자가 처방한 수면제를 복용한 후 환자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3〉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의 유형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5) : 나쁜 소식 전하기/의학적 지식에 반한 치료 요구		
증례 9 : 간암 진단을 감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의 배우자	윤리적	있음
증례 10 : 불필요한 수술을 요구하는 진행성 위암 환자	윤리적·법적	있음
소항목(6) :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		
증례 11 :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려 하는 환자	윤리적·법적	없음
증례 12 : 우울증 환자의 살해 충동 고백	윤리적·법적	있음
증례 13 : 환각제 복용 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14세 여자	윤리적·법적	거의 없음
소항목(7) : 설명동의		
증례 14 : 조영제 사용시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윤리적·법적	있음
증례 15 :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설명동의 획득	윤리적·법적	거의 없음
증례 16 : 아버지를 위해 간을 기증하기로 한 고교생	윤리적·법적	있음

소항목(8) :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결정		
증례 17 : 종교적 이유로 백혈병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	윤리적	있음
증례 18 :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윤리적	있음
소항목(9) : 환자로부터의 선물/금품 수수		
증례 19 : 수술을 앞두고 촌지를 제공하는 환자의 보호자	윤리적	있음
증례 20 : 값비싼 고급 와인을 가져온 외래 환자	윤리적	거의 없음
소항목(10) : 환자와의 애정 및 금전관계		
증례 21 : 이성 환자의 저녁 식사와 음악회 초대	윤리적	거의 없음
증례 22 : 환자의 딸에게 호감을 갖게 된 전공의	윤리적	거의 없음
증례 23 : 의사에게 다단계 마케팅에의 참여를 권유하는 단골환자	윤리적	거의 없음
소항목(11) : 의료 실수의 공개 및 대처		
증례 24 : 전공의의 부주의로 침대에서 떨어진 환자	윤리적	있음
증례 25 : 자궁암 진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윤리적 · 법적	있음

「소항목(6)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학적 전통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를 어길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A). 3. 정신과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가 일반 환자의 경우와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비밀/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증례 11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려 하는 환자에 관련된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부인에게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는가? 2) 환자의 비밀을 지켜줄 경우와 지키지 않을 경우 각각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3) 국가가 환자의 비밀(성병, 법적 전염병)을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위의 첫 번째 토의주제는 윤리적 의무인지 혹은 법적인 의무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제1항에는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진단·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모호한 규정으로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논의를 진행한다면 통합적인 윤리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소항목(8) 종교적 신념과 의학적 결정」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치료 결정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열거

하고 의료윤리의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치료의 중단이나 치료를 시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진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A). 3. 의사결정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소아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종교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A).

위 학습목표는 증례 17과 관련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증례 17은 종교적 이유로 골수검사,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사례이다. 그러나 증례 18 역시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증례 18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사례인데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본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 충돌하는 두 가지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 2)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 어린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주치의로서의 책임은 어떤 것일까?

위의 두 번째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때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 역시 수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의 수혈 거부 행위가 위법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수혈을 거부한 생모를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바 있다.¹²⁾ 그러나 보라매병원 판례를 고려하면 이 사례는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의 법적 책임은 문제되지 않았지만 보라매병원 판례를 고려한다면 살인방조가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언급한 후 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논의를 진행한다면 통합적인 윤리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표 4〉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Doctors’ Relationship with Other Healthcare Providers’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의 유형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12) : 동료 의사와의 관계		
증례 26 : 술과 약물남용으로 실수가 잦은 동료 전공의	윤리적	없음
증례 27 : 타과 전문의의 잘못된 항우울제 처방	윤리적	없음
증례 28 : 타병원 의사의 진료오류에 대한 은폐 지시	윤리적	있음
소항목(15) : 병원 내 다른 의료직역들과 관련된 윤리 문제		
증례 29 : 간호사에게 자궁경부도말검사를 지시하는 의사	윤리적·법적	있음
증례 30 :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박피술을 지시한 의사	윤리적	있음
증례 31 : 전공의-방사선 기사 사이의 갈등	윤리적	없음

12)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결.

「소항목(15) 병원 내 다른 의료직역들과 관련된 윤리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의료법(제2조)이 정한 의료인의 종류와 각각의 임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 2.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A). 3. 의사와 의료 영역에서 일하는 새로운 직업군(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피부관리사) 사이의 협력 및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상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A).

위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은 때로 의사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증례 29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경부도말검사를 지시하였으나 간호사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 환자의 이득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의 견해가 다를 경우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3) 과거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던 의료행위 중 일부(예를 들어 오래되고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하위 기술을)를 간호사나 기타 의료관리 인력에게 위임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의료행위를 의사가 독점하는 문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위의 첫 번째 토의주제는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자궁경부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

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 없이 단독으로 자궁경부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한 의료법인 이사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한 바 있다.¹³⁾

증례 30 역시 의사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이다. 증례 30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을 통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은 환자의 이득을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의료의 독점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어떤 반론을 펼 수 있을까? 2) 의료환경의 변화로 의료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들이 실제로 병·의원에서 환자의 검사나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하여 의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3) 의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협업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의료의 영역 확장인가 아니면 전문직 윤리 위반인가?

위의 토의주제에는 법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

13)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의사가 의료행위 또는 그의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크리스탈 필링 박피술을 시술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예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14)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보건범죄단속예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된다. 이처럼 다른 직역과의 불법적 협업은 전문직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의사에게는 치명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증례를 전달할 때 그 법적 측면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Healthcare System’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의 유형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16) : 과잉/방어진료 문제		
증례 32 :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과도한 수술을 권유하는 선배 원장	윤리적	있음
증례 33 : 경미한 허리통증에 고가의 검사(MRI)를 요구하는 환자	윤리적	있음
소항목(17) : 의료제도 및 보험과 관련된 문제		
증례 34 : 감기 진단을 폐렴으로 바꾸기로 한 C원장	윤리적	있음
증례 35 : 암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개복 조직검사를 요구하는 환자	윤리적	있음
증례 36 :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장애인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	윤리적	있음
증례 37 : 내과 의사와 한의사의 형식적인 양한방 협진	윤리적 · 법적	있음

「소항목(16) 과잉/방어진료 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과잉/방어진료가 흔히 행해지는 개인적 동기와 제도적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과잉/방어진료의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용구하는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진료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례 32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과도한 수술을 권유하는 선배 원장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본 증례에서 교과서적인 표준진료가 왜곡되거나 위협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일까? 2) K원장의 의도대로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윤리적 원칙을 어기는 것일까?

이러한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1)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2)

14)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도290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혹은 동법 제85조의2에 따라 5배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3)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증례 32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논의한 후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항목(17) 의료제도 및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공단의 요구가 환자의 의학적 이익과 상충할 때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2. 민간의료보험등과 관련된 환자의 부당한 요구들의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3. 각종 진단서(장애평가, 허위진단 등)와 연관된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4. 양한방 진료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윤리적 증례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

나 각종 진단서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례 36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장애 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 관한 사례이다. 환자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불면증과 불안 역시 감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준은 아닌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러한 진단서를 남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은 무엇일까? 2) 진단서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 환자의 예상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형법상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소항목(3) 의사의 진실성 - 허위진단서/의무기록의 위·변조」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증례 36의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 증례 32는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논의한 후 윤리적 쟁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6〉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End-of-Life Issues’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19) : 치료중단과 유지		
증례 38 :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혈액투석에 동의하지 않는 보호자	윤리적	있음
증례 39 : 폐렴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거부하는 가족들	윤리적	있음
소항목(20) : 죽음의 정의와 안락사 논의		
증례 40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의 뇌사 판정	윤리적	거의 없음
증례 41 :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안락사 요구	윤리적·법적	있음

「소항목(19) 치료중단 및 유지」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치료중단과 관련한 윤리적 논점을 아래의 경우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 1) 회복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 중단, 2)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치료 중단, 3) 임종환자의 치료 중단, 4)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치료 중단, 5)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서의 치료 중단, 6) 영유아 및 소아환자의 치료중단. 2. 무의미한 치료(futile management)를 정의하고 환자의 삶의 질과 무의미한 치료에 관련된 윤리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3. 사전지수(advance directives)의 임상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전지시의 한 형태인 심폐소생술 거부(Do not resuscitate)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하여 환자, 환자의 대리인 및 의료진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의 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자의 이송과 자의 퇴원에 연관된 윤리문제들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B).

이러한 학습목표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는 자기결

정권에 근거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바,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①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②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③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 역시 제시하였으며 사전의료지시서가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추정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¹⁵⁾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를 논의하고 위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7〉 Presentation of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Research Ethics’ Domain

소항목 및 증례	제시된 논점	의사의 법적 책임 가능성
소항목(21) : 의학연구에서의 이해상충		
증례 42 : 부정적인 연구결과의 공개불가를 요청하는 제약회사	윤리적	거의 없음
증례 43 : 자신의 환자를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 경우	윤리적	있음
소항목(22) :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		
증례 44 : 지도교수의 연구데이터 조작을 발견한 경우	윤리적	거의 없음
증례 45 : 전공의 논문의 공동 연구자 등재 관행	윤리적	거의 없음
소항목(23)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		
증례 46 : 새로운 광선 치료기의 시험에 참여하게 된 의과대학생	윤리적	있음
증례 47 :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동의 획득	윤리적	거의 없음

「소항목(21) 의학연구에서의 이해상충」에서 제시된 구체적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의학연구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A). 2. 제약사,

의료기구회사 등 의료산업이 주식, 특허, 자문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15)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판결.

있어야 한다(B). 3. 건강유해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예, 담배회사)이 제품과 관련된 연구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B). 4.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A).

위 학습목표는 윤리적 논점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연구에서도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증례 43은 자신의 환자를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때 신약의 효과는 알 수가 없고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동의서에는 적혀 있으나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는 의사의 이야기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진료현장에서 자신의 환자를 연구대상자로 모집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2) 피험자 모집에 있어서 주치의이자 연구자인 당신의 역할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3) 당신이 피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주치의로서의 역할 갈등 또는 의무 갈등의 문제를 논의해 보시오. 4) 가정주부 P씨가 연구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등 '치료와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이러한 토의주제는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서 서명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가' 항의 수술, 특히 전신 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⁶⁾ 일반적인 진료에서도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 후 윤리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고찰

의료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의료현장에서의 행위를 검토함에 있어 윤리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¹⁷⁾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특정 사안을 실정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비판하고 그것과 별도의 차원인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비판함으로써 분별을 하되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와 대한의학회가 개발한 '수련의를 위한 의료윤리 교육목표'는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선택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를 증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윤리 교육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한 전문직 윤리 교육 증례는 일반적 진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보통 의사에게는 그것의 법적 측면이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 행위의 법적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위 학습목표 중 일부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을 알려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레커차 회사와의

16)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17) 유호중, 손명세, 이경환. 앞의 책. 2002 : 13-17.

교통사고 환자 유치 협력에 관한 사례인 증례 4에서 제시한 토의 주제에는 「이러한 제안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가? 근거가 되는 법안¹⁸⁾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례가 윤리적 쟁점만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직 윤리교육에서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전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를 이해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의사가 법적 무지 때문에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별함으로써 불합리한 의료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길러주고 전문직적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다.¹⁹⁾

예를 들어 「소항목(1) 비전문직 진료행위 - 검증되지 않은 시술/보완대체의학」에서 제시된 증례 1은 근거 없는 “기” 진단기의 도입여부에 관한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례 1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도 있으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하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서 면허 자격 정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 후 의사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시킨다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항목(15) 병원내 다른 의료직역들과 관련된 윤리문제」에서 제시된 증례 30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의사

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이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토의 주제는 의사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크리스탈 필링 시술을 한 의사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되었다는 점을 의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신중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례의 법적 측면을 논의한 후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업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해 나간다면 의료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문직 윤리교육에서의 사안의 법적 측면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교육처럼 오로지 법적 금지에 대한 교육, 즉 위반 시 처벌 혹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만을 목적으로 전문직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는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의무를 과도하게 법적 의무로 규율함으로써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측면을 전달한다는 것이 반드시 법적 판단을 우선시키고,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점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윤리 교육은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령 위반일 수도 있는 증례를 오로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전달하는 경우 수련의가 이를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만 오해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때로는 매우 중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법적 측면을 전달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의료법’, ‘의료윤리’ 과목의 문제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18) 법률 혹은 법령의 오기로 보인다.

19) 이상돈. 의사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의학교육연수원(편). 임상윤리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165-174.

의 ‘의료법’ 교육은 주로 의료행정법적인 내용을 국가고시 대비로 가르칠 뿐 일반적인 환자 진료와 관련된 주의 의무, 설명의무 및 환자의 동의의 법적 측면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의료윤리 교육도 주로 인간복제, 안락사, 낙태, 유전자 조작 등 생명윤리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미의 ‘Medical Law’ 라는 제목의 저작들은 일반적인 환자진료와 관련된 의료과실의 법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이 영미의 ‘Medical Law’ 가 아닌 것이다.²⁰⁾ 또한 미국 의사국가고시 의료윤리(USMLE Medical Ethics) 대비 수험서는 환자의 의사능력(competence and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설명의무 및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의료과실(malpractice) 등 법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여 해설하고 있다.²¹⁾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은 일반적인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누락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영역을 소위 ‘의료법’ 에 포함하여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의료윤리’ 에 포함하여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그 흠결은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규강의’ 는 주로 해당 법의 이해와 수용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윤리’ 가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수련의 의료윤리 교육은 이러한 의료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변호사 윤리교육처럼 의사의 법적 책임 전반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발전 방향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윤리학과와 법조인이 함께 교육을 담당한다면 더욱 통합적인 전문직 윤리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

색인어

의료윤리, 윤리교육, 수련의

20)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을 ‘Medical Service Act’ 라고 번역하고 있다.

21) Fishcer C. USMLE Medical Ethics, New York : KAPLAN Publishing, 2009 : 5-18, 55-60.

Legal Perspectives on the Educational Goals of Ethics Programs for Medical Trainees

PARK Hyoung-Wook*, KIM So-Yoon**, SOHN Myong-sei***

◉ **Abstract**

In 2007,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published “The Educational Goals of Ethics Programs for Medical Trainees,” which presents 47 case reports and related discussions. Although the legal and medic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are closely related, they can often be distinguished. Therefore, in omitting some of the legal aspects of the case reports, the aforementioned publication fails to guide trainees in how to deal with issues similar to those raised in the case report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doctors described in those case reports. The result shows that the publication discuss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doctors in only nine of 31 relevant cases. We argue that the ethic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rofessionals need to be taught in an integrative manner. Furthermore, we claim that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case reports must be studied with the help of legal professionals and should be reflected in publications used to train medical professionals.

◉ **Keywords**

Medical ethics, Ethics education, Medical trainees

* Department of Medical Law & Eth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Medical Law & Ethic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